#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

- 보험민원을 중심으로-

2024. 8.

관계기관 합동

# 순 서

| I. 추진배경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
| II. 신뢰도 저해요인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III. 신뢰도 제고방안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5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7                  |
| 3.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Ⅳ. 향후계획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|
| 1V · OT/11=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1. 추진배경

- □ 국내 보험산업은 **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빠르게 성장\***했지만, 산업에 대한 **'낮은 국민신뢰'**는 **고질적 문제**로 지적됨
  - \* 한국 보험시장 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(Swiss Re/23년)
  - 수년째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지급 분쟁
     등으로 국민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악화

#### 【※참고: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관련 자료】

- ▶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 가량이 **보험민원**으로 **가장 큰 비중**(금감원/'23년)
  - \* 보험 53%(손보 39%, 생보 14%) 은행 16.7%, 금투 8.4% 등
- ► 금융회사,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신뢰수준: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보험산업이 금융산업 최하위(보험연 설문조사/'20년)
- □ 보험이 소비자와 위험보장을 약속하는 신뢰에 기반한 산업임을 고려할 때, 국민 신뢰도 저하는 다양한 부작용 초래
  -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보험 관련 효익도 감소
  - 신규 계약 감소 등을 유발하여 산업 성장성 저해요인으로 작용 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신사업 시장 진출에도 걸림돌
- □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집행되는 **개혁과제**들의 **효과적 이행**을 위해서는 **국민신뢰 기반을 마련**하는 것이 **선행될 필요** 
  - 소비자 혜택을 크게 하고,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보험산업의 건전한
    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 구축
    - ⇒ "국민신뢰 회복"을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하고, 판매채널, 영업관행, 상품구조 개선 등을 연계한 전반적인 종합대책 추진
      - ※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부터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先발표하며, 후속회의 에서 지속 논의·발표 예정

# Ⅱ. 신뢰도 저해요인

#### 1.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분쟁

- □ 보험금 지급지연 및 지급 수준에 대한 이견 등으로 상품 판매시 약속한 금액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만
  - \* 보험민원 5만여건 중 보험급 지급 관련 민원이 2.2만여건으로 약 45% 차지
- □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·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의료자문, 손해 사정 제도들을 오히려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인식
  - ➡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·정확하게 지급하는 관행 확립

#### 2. 판매자 중심의 모집관행으로 불완전판매 등 이슈

- □ 판매자 위주의 **고수수료 상품 판매관행**, 부당승환 유도, 절판 마케팅 등의 문제 답습
  - 연고주의 판매문화로 인하여 상품에 대한 설명부족 및 계약 유지·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
    - ⇒ 기존 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판매채널로 변모 필요

#### 3. 다량의 민원발생과 처리지연

- □ 보험민원은 약 5만건이 접수되어 전체 금융민원 중 가장 큰 비중\*
  - \* '23년 권역별 비중: 보험 53%(손보 39%, 생보 14%) 은행 16.7%, 금투 8.4% 등
  - 특히, 보험민원은 의료·법률 쟁점인 분쟁민원이 많아 민원 처리 기간도 지연<sup>\*</sup> → 민원처리 기간 동안 불만이 누적되는 악순환 구조
    - \* 민원평균 처리일수: ('19년) 30.1일 → ('21년) 49.9일 → ('23년) 62.5일
    - ⇒ 지속 증가하고 누적되는 보험민원의 효율적 처리 시급

## [참고]보험민원 분석

- □ (총괄) '23년 보험민원은 약 5만건 접수(금감원 접수 기준)되었으며,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가장 큰 비중\*('23년 53%)
  - \* ('23년 권역별 비중) 보험 53%(손보 39%, 생보 14%) 은행 16.7%, 금투 8.4% 등
  - 특히 보험민원의 경우, 의료·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민원이 증가하여 민위 평균 처리기가\*도 지속 증가
    - \* ('19년) 30.1일 → ('21년) 49.9일 → ('23년) 62.5일
- □ (민원사유) 보험금 지급 민원이 보험민원의 절반(약 45%)으로,이외 보험모집(15%), 보험 면·부책(11%), 계약성립(7%) 순

< 보험민원 유형별 현황(금감원)>

| 구분        | '21년   |        |        | '22년   |        |        | '23년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<b>丁正</b> | 손보     | 생보     | 합계     | 손보     | 생보     | 합계     | 손보     | 생보     | 합계     |
| 보험금 지급    | 15,274 | 3,035  | 18,309 | 19,711 | 2,956  | 22,667 | 19,488 | 2,949  | 22,437 |
| 보험모집      | 2,234  | 9,986  | 12,220 | 1,669  | 8,712  | 10,381 | 1,680  | 5,729  | 7,409  |
| 면·부책      | 2,343  | 2,097  | 4,440  | 4,053  | 2,180  | 6,233  | 3,765  | 1,838  | 5,603  |
| 계약 성립     | 3,324  | 689    | 4,013  | 2,387  | 636    | 3,023  | 2,655  | 836    | 3,491  |
| :         | :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합계        | 32,112 | 18,355 | 50,467 | 35,157 | 16,733 | 51,890 | 36,238 | 13,529 | 49,767 |

#### <소관별 보험민원 추이>

<주요 보험민원 유형>



- **(손해보험) 대부분 보험금 지급**(예:실손·자동차보험) 관련으로 민원이 발생하며, 매년 민원 증가
- ☞ (주요 민원사유) 보험금 지급지연 및 보험금 지급 수준 이견 등
- (생명보험)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약 4~50% 비중
- ☞ (주요 민원사유) 설계사의 설명 불충분, 부당승환 유도 등 불완전판매 관련

# Ⅲ. 신뢰도 제고방안

추진 목표

◈ 신뢰받는 "국민동반산업"으로 변모

추진 전략

- ◈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약속된 금액을 지급
- ◈ 소비자 친화적인 판매채널로 개선



# 1 부당한보험금지급거절방지

- 의료자문관행개선
- 소비자권익제고위한손해사정제도개선
- 보험금청구편의성제고

# 2 보험계약단계별소비자친화적제도정비

- (상품개발)약관심사시스템개선
- (보험영업)과도한설계사 스카우트경쟁방지
- (상품설명)소비자에 대한설계사 정보제공 강화
- (계약체결)불완전판매예방위한해피콜실효성제고

# 세부 과제

# 3 보험민원처리효율화

- 단순민원보험협회이첩처리
- 금감원보험민원처리역량강화



 판매채널,회계제도,상품구조등을연계한 소비자보호방안지속추진

#### 1.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

◆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공정·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, 청구 편의성도 대폭 제고

#### 1. 의료자문 관행 개선

- □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 제고
  - 이 (의료자문 기관) 진료·진단 받은 의료기관 보다 상급 기관\*에서만
    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제한
    - \* 단, 상급종합병원 건은 주치의 상세소견을 우선 확인

| 의료기관   | 의료자문 의뢰 가능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원·병원  | <b>종합·상급종합병원 소속</b> 전문의 | ※ (현행) 별도 규정은 없으나,   |
| 종합병원   | <b>상급종합병원 소속</b> 전문의    | 대부분 <b>종합·상급종합병원</b> |
| 상급종합병원 | (주치의 상세소견 확인)           | <b>소속 전문의</b> 에게 의뢰  |

- (자문의)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종합·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
   자문의 Pool을 별도 구성하여 의료자문 실시
- □ 의료자문 제도의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의료자문 공시제도 개편
  - (내부통제) 의료자문 남발, 자문의 편중 방지 등을 위해 현행 「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」 내용 중 필요사항\*을 법제화
    - \* ① 자문 단계별 절차 및 준수사항, 자문의 선정기준·절차 마련 및 사후관리 의무 ②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및 역할 등
  - (공시) 의료자문 실시 사유별로 공시(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, 일부지급건수)를 세분화하여 의료자문 제도 투명성 확보
- ☞ (要조치사항) 보험업감독규정(§ 7-49), 시행세칙<별표14> 개정

#### 2.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 제도 개선

- □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도입된 **독립손해사정사**\* 제도 내실화
  - \* 보험사의 고용이나 위탁이 아닌 소비자가 별도로 선임하는 손해사정사
  -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품대상\* 및 보험사에 요청
     하는 선임기한\*\*(3영업일 → 10영업일) 대폭 확대
    - \* (기존) 실손보험 청구 건 → (개선)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
    - \*\*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
    - 보험사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및 동의기준\*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
      - \* 소비자가 독립손사 선임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
- □ **손해사정업자의 지점 축소 방지**를 위해 **지점에** 대한 **내부통제 강화**\*를 전제로 **지점** 소속 손해사정사의 **상근의무 완화** 
  - \* 지점에 대한 **관리·감독체계** 마련, 高**난이도**(고액화재건 등) 청구건에 대한 **손해사정사 현장조사 의무화, 보험회사**의 **손해사정 업무위탁 평가기준** 반영 등
  - ☞ (要조치사항) 보험협회 및 손사회 · 손사법인협회 자율규제 개정

#### 3.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

- □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개선
  - 모바일을 통한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을 다양화
    - \* (기존) 인감증명서로만 인증  $\rightarrow$  (개선) **전자적 방식**의 **모바일 본인인증**도 가능
  - 대리청구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방안 마련
    - \* **수익자 사전동의** 의무화, 고액 청구권은 콜센터를 통해 **보험금 입금 확인** 등 **2중 안전장치 마련** 등
  - \* 실손 청구 전산화는 '24.10월말 개시 목표로 준비 중
  - ☞ (要조치사항)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(표준약관) 개정, 보험협회 가이드라인 신설
  - →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는
     관행을 철저히 확립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

## 2.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

◈ 상품개발-영업·설명-계약체결 등 보험계약 全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

#### 1. (보험상품 개발) 약관 심사시스템 개선

- □ 보험사의 **부적정 상품 개발 방지** 및 **소비자피해 예방**을 위한 약관심사시스템(금감원) 전면 개편
  - 10년치 신고수리 상품의 심사결과 및 검토의견, 자율상품 변경 권고 사유 등을 집적·전산화하여 全 보험사가 공유\*
    - 보험사는 변경권고 사유 등을 미리 파악하여 부적절한 상품 개발 방지 가능

#### 2. (보험영업)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

- □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\*를 야기하는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「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」제정 \* 예 실적 미달성 환수 조건부 정착지원금 지급 → 무리한 실적달성을 위한 승환계약 발생 등
  - (산정·환수 기준) GA별로 정착지원금 운영규정을 마련·운영하여 합리적인 정착지원금 지급 유도
    - (선정·산정기준) 설계사 관련 정보\*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착 지원금 지원대상 및 산정·지급기준 등을 마련토록 의무화
      - \* 설계사 활동년수, 이직횟수, 전년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    - (환수기준) 계약유지율 등 모집 건전성 핵심 지표를 환수기준\*에 적극 반영하여 모집질서 확립 추진
      - \* (기존) 목표실적  $\rightarrow$  (개선) 계약유지율, 불완전판매율, 민원발생률 등을 포함
  - ② (공시) 각 GA에서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에 관련된 정보 공시\*
    \* GA별 정착지원금 지원총액, 선지급률, 설계사 정착률 등을 대리점협회에서 공시
  - ③ (내부통제) GA 본사가 정착지원금 운영현황을 통합관리하고, 지원금 수령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지표 상시 점검하는 체계 마련

- □ 설계사 채용 관련 GA 허위·과장광고 예방
  - (광고규제) 보험협회 광고심의·제재\*(자율규제) 대상에 현행 보험상품·업무광고 뿐만 아니라 설계사 채용광고도 포함
    - \* 자율규제 위반시 광고 게시 중지, 시정명령, 제재금 부과 등 조치
  - (자율조치) 허위광고는 즉시 시정조치하고, 대리점 자율협약에 설계사 채용 과장광고를 금지 행위에 포함
  - ☞ (要조치사항)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(대리점협회 자율규제) 신설, 보험협회 자율규제(광고심의규정) 개정
  - ※ 후속 검토하는 GA 운영위험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, GA 판매책임 강화방안 과제 등과 연계 시행
  - ※ 자율규제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검사·제재 강화 등을 통해 엄정 대응

## 3. (보험상품 설명) 소비자에 대한 설계사 정보제공 강화

- □ 소비자가 설계사에 관련된 신뢰도 정보를 **손쉽게 확인**하여 **우수 설계사**를 **선택**할 수 있도록 **정보제공 확대** 
  - 설계사는 보험가입 권유시 모집경력, 제재이력, 계약유지율 등
     핵심 주요 정보를 별도 서면으로 소비자 사전 제공토록 의무화
  - 보험 안내자료(청약서, 보험증권)에 불완전판매비율 뿐만 아니라, 설계사 계약유지율(13개월 및 25개월차) 등 신뢰도 정보를 함께 기재
  - 소비자가 간편하게 설계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e-클린보험서비스\* 접속이 가능한 OR코드 삽입
    - \* 설계사의 전·현직 소속사, 금융당국 제재이력, 불완전판매율 등 조회 가능
  - 소비자에게 e-클린보험서비스 활용방안을 사전 안내하도록 의무화
  - 보험협회가 설계사\*의 신뢰도 정보를 집적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
    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
    - \* (기존) 계약유지율 등 정보제공에 동의한 설계사 정보만 조회 가능
    - ☞ (要조치사항) 보험업법 시행령(§ 84의2) 및 감독규정(§ 7-45⑤) 개정, 보험협회 공시규정 개정
    - ※ 후속 검토하는 수수료 위주 영업관행 개선 과제 등과 연계 시행

#### 4. (보험계약 체결)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실효성 제고

- \* 계약권유 단계의 설명의무와 별개로 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직접 핵심내용을 설명토록 하는 체결단계 설명의무(해피콜)를 법제화하여 운영 중
- □ 소비자가 **편리하고 실효성 있게 해피콜**을 **진행**할 수 있도록 관련 **스크립트 개선** 및 **편의 서비스 확대** 
  -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내용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여 해피콜
     소요시간을 단축하며,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용어 순화
  - 고령자 맞춤형 가족 조력제도\* 및 사전 알림서비스\* 도입
    - \* 해피콜 실시 전 1영업일 이내 소비자에게 문자 등으로 사전안내 의무화

#### 【※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】

- **(기존)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화로만 해피콜**을 시행하게 되어 있어 **청력** 등의 문제로 **해피콜 진행에 불편사항** 발생
- **(개선) 가족을 조력자**(증빙서류 제출)로 지정하고, **조력자 도움** 통해 **전자적 방식** 으로 해피콜 진행 가능
- □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해피콜 검증기능 강화
  -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도
     해피콜을 실시(현재 계약자에게만 실시)
  - 해피콜 거부자에게도 계약의 주요내용을 별도 채널(문자, 우편,
     이메일 등)을 통해 안내토록 제대화
- ※ 해피콜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제재규정 개선도 추진
  - ☞ (要조치사항)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(§ 2-34의2) 개정 보험협회 자율규제(애피콜 가이드라인) 신설
  - ★ 소비자가 최우선시 되는 소비자 친화적 판매채널로 개편※ 판매채널 개편 과제는 향후 보험개혁회의 통해 지속 논의·발표

#### 3.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

◆ 단순 민원은 협회에 이첩하여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, 금감원 민원처리역량 강화 등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

#### 1. 단순민원 협회 이첩·처리

- □ 금감원은 문제가 되는 **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하며** 非**분쟁성 민원은** 보험협회로 이첩·처리
  - <sup>1</sup>단순 질의사항, <sup>2</sup>기존 보험사 이첩 처리사항, <sup>3</sup>보험계약자와 무관한 민원 등은 협회에 이첩하여 처리
    - (이첩민원 주요예시) 보험사 단순 업무처리 실수, 직원 응대 불만, 단순 질의 등
      - ②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, 유사 상품간 보험료 차이 문의 등
      - **③** 보험사-판매채널 간 민원, 설계사 수수료 문의 등
- □ 다만, 보험협회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
  - 1 민원인 혼란 및 중복접수 방지 등을 위하여 보험민원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
  - ②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민원 처리체계 및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
  - ③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협회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, 협회 민원처리(예:이첩건수, 처리결과 등) 관련 공시 시행
    - ☞ (要조치사항) 보험업법 시행령(§ 84)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감원-협회간 민원처리 전산시스템 구축
- ※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민원 해결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원처리 절차 및 체계 등 정비 추진

### 2. 보험민원 처리역량(금감원) 강화

- □ 보험민원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소관부서 역량 강화 추진
  - 한시적으로 보험민원 처리부서 정원 증원 및 직원 사기진작 등을
     위한 인센티브 강화 검토
  - → 전체 보험민원의 약 14%(7천여건)가 이첩되어, 민원처리 속도도
     향상될 것으로 추정

# Ⅳ. 향후계획

● 과제별로 관련 법령개정 및 필요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,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후속 과제들 지속 논의·발표 예정

| 과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기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.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· 의료자문 자문의 POOL 구성 협의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4.하            |
| • 의료자문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       | 보험업감 <del>독규</del> 정,<br>시행세칙 | '25.상            |
| •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를 위한 보험협회 등 자율규제 개정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4.하            |
| · 보험금 대리청구 활성화를 위한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   | 보험업감독업무<br>시행세칙               | '25.1월           |
| 2. 보험 계약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• 금감원 약관 심사 시스템 개선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5,1Q           |
| · 보험대리점협회 자율규제 신설(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4.8월           |
| • 보험협회 광고심의 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4.하            |
| · 보험협회 설계사 정보 집적을 위한 법령 개정          | 보험업법 시행령,<br>감독규정             | '25.상            |
| · 보험안내 자료에 설계사 정보 및 QR코드 기재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4.하            |
| ㆍ 해피콜 제도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신설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4 <u>.</u> 10월 |
| 3.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• 단순민원 이첩 근거조항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        | 보험업법 시행령                      | '25.상            |
| · 금감원-협회 간 민원이첩·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5.하            |
| · 금감원 민원처리 역량 강화 조치 시행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5.초            |